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34의2] <개정 2015.7.21.>

## 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(제121조 관련)

### 1.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

가. 기술능력

1) 검사원의 자격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가) 환경,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나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, 화공, 안전관리(가스),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

다)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

2) 검사원의 수

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비고: 휘발유·경유·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·CNG·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, 두 검사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나. 검사장비

1) 휘발유·경유·바이오디젤(BD100) 검사장비

| 순번 | 검사장비 | 수량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가스크로마토그래피(Gas Chromatography, FID, ECD) | 1식 | |
| 2 | 원자흡광광도계(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)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(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) | 1식 | |
| 3 | 분광광도계(UV/Vis Spectrophotometer) | 1식 | |
| 4 | 황함량분석기(Sulfur Analyzer) | 1식 | 1ppm 이하 분석 가능 |
| 5 | 증기압시험기(Vapor Pressure Tester) | 1식 | |
| 6 | 증류시험기(Distillation Apparatus) | 1식 | |
| 7 | 액체크로마토그래피(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)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(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) | 1식 | |
| 8 | 윤활성시험기(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) | 1식 | |
| 9 | 밀도시험기(Density Meter) | 1식 | |
| 10 | 잔류탄소시험기(Carbon Residue Apparatus) | 1식 | |
| 11 | 동점도시험기(Viscosity) | 1식 | |
| 12 | 회분시험기(Furnace) | 1식 | |
| 13 | 전산가시험기(Acid value) | 1식 | |
| 14 | 산화안정도시험기(Oxidation stability) | 1식 | |
| 15 | 세탄가측정기(Cetane number) | 1식 | |
| 16 | 별표 33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| 1식 | |

2) LPG·CNG·바이오가스 검사장비

| 순번 | 검사장비 | 수량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가스크로마토그래피(Gas Chromatography, FID, ECD, TCD, PFPD) | 1식 | |
| 2 | 황함량분석기(Sulfur Analyzer) | 1식 | 5ppm 이하 분석 가능 |
| 3 | 증기압시험기(Vapor Pressure Tester) | 1식 | |
| 4 | 밀도시험기(Density Meter) | 1식 | |
| 5 | 동판부식시험기(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) | 1식 | |
| 6 | 증발잔류물시험기(Residual Matter Tester) | 1식 | |
| 7 |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| 1식 | |

비고: 휘발유·경유·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·CNG·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2.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

가. 기술능력

1) 검사원의 자격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가) 환경,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나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, 화공, 안전관리(가스),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

다)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

2) 검사원의 수

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, 그 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비고: 휘발유용·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·CN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, 두 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나. 검사장비

1) 휘발유용·경유용 첨가제 검사장비

가) 배출가스 검사장비

| 순번 | 검사장비 | 수량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차대동력계 | 1식 | 휘발유, 경유 공용 |
| 2 |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| 2식 | 휘발유용, 경유용 각 1식 |
| 3 | 배출가스 분석장치 | 2식 | 휘발유용, 경유용 각 1식 |
| 4 | 자료처리 장치 | 1식 | 휘발유, 경유 공용 |
| 5 | 그 밖의 부속장치 | 1식 | 휘발유, 경유 공용 |
| 6 | 원동기동력계 | 1식 | 경유 전용 |
| 7 | 매연 측정기 | 1식 | 경유 전용 |

나)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: 제1호나목 1)에서 정하는 검사장비

2) LPG·CNG용 첨가제 검사장비

가) 배출가스 검사장비

| 순번 | 검사장비 | 수량 |
|---|---|---|
| 1 | 차대동력계 | 1식 |
| 2 |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| 1식 |
| 3 | 배출가스 분석장치 | 1식 |
| 4 | 자료처리 장치 | 1식 |
| 5 | 그 밖의 부속장치 | 1식 |

나)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: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장비는 제1호나목 2)와 같고, 유해물질검사장비는 다음과 같다.

| 검사장비 | 수량 |
|---|---|
| 원자흡광광도계(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)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(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) | 1식 |

비고: 휘발유용·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과 LPG·CNG용 첨가제 검사기관의 검사대행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3. 촉매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

가. 기술능력

1) 검사원의 자격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가) 환경,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나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중직무분야 중 자동차, 화공, 안전관리(가스),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

다)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

2) 검사원의 수

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나. 검사장비

| 순번 | 검사장비 | 수량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요소함량분석기(Total Nitrogen Analyzer) | 1식 | |
| 2 | 원자흡광광도계(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) 또는<br>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(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) | 1식 | |
| 3 | 분광광도계(UV/Vis Spectrophotometer) | 1식 | |
| 4 | 밀도시험기(Density Meter) | 1식 | |
| 5 | 굴절계(Refractometer) | 1식 | Abbe 방식 |
| 6 | 자동적정기(Auto Titration) 또는<br>적정기(Titration) | 1식 | |
| 7 |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| 1식 | |